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93호
2024년 4월 5일
금요일

공 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8 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9 호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 회 사 무 국 21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0 호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 회 사 무 국 30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1 호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의 회 사 무 국 44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8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난청 환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난청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명시(안 제3조)
-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절차(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 대상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안 제7조)
-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안 제8조)
- 지원 보청기의 사후관리(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5. ~ 4. 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33-1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난청 환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난청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명시(안 제3조)
-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절차(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 대상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안 제7조)
-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안 제8조)
- 지원 보청기의 사후관리(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급여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 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쪽)

(뒷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구로구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① 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구입일	
-------	--

③ 보청기 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④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⑤ 실구입금액	⑥ 본인부담액	⑦ 지급금액 (청구금액)
원	원	원

⑧수령인	⑨금융기관명	⑩계좌번호	⑪예금주	⑫생년월일
[]수급권자				
[]보청기 제조·판매자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⑬ 수급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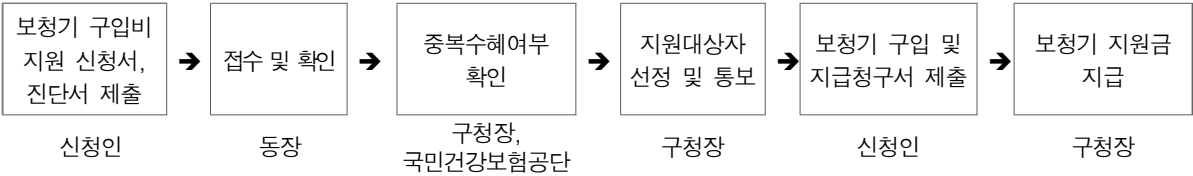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보청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보청기 구입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보청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구입한 보청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④: 보청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를 적습니다.
- ⑤: 구입한 보청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⑥: 구입한 보청기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 ⑦: 보청기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 장애인보조기
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 ⑧: 보청기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보청기 제조·판매자 :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물품확인서

☐ 수급권자 성명	
☐ 생년월일	
☐ 담당공무원 확인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보청기사진	



[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

연번	지원대상자			지 원 내 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일	지급일	금액	계좌번호 (거래은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3조, 제7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 노인성 난청 질환자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 인천시 타구 및 타 자치단체 참고
 - 인천시 옹진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예산 총 9,000천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예산 총 30,000천원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 미 화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0. 2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개정 2022. 12. 9.>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이하“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분류	유형	용도	구분
아. 그 밖의 보조기기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 의료급여법

- 제13조(장애인 및 임신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19호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안 제4조)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안 제5조)
- 장애인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교육(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5. ~ 4. 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0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장덕수·이연주 의원

찬 성 자 : 박정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안 제4조)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안 제5조)
- 장애인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교육(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교육 및 홍보)에 따른 비용 발생
 -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작성자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 미 화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20호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남동구민이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안 제4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제 및 제거 등 처리 지원(안 제5조)
-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5. ~ 4. 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1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황규진·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김은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남동구민이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안 제4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제 및 제거 등 처리 지원(안 제5조)
-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계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및 제12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 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이 조에서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은 남동구에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③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5. 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잔재물 확인
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④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활동 참여 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감시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안 제6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시 1억 5천만원 미만의 한시적 경비로 예상되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활동 참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 그 외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구체화 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 현 천

[참고자료]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珪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②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폐업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4-21호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예방 및 치료 관련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5. ~ 4. 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32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이철상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예방 및 치료 관련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7조, 제15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

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연계,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도박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신체적·정신적·사회적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과 도박중독자 조기발견·상담 등 중독자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도박중독관리사업 비용
-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비 : 기존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비 중 중독예방교육 사업비를 바탕으로 도박중독관리사업비 추계 및 3%씩 상향
- 인건비 :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 따른 인건비 기준(2명)
- 운영비 및 시설비 : 프로그램실 증설을 위한 공사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인 건 비	74,599	75,098	75,598	76,098	76,598
사 업 비	26,172	26,972	27,772	28,572	29,372
운 영 비	4,580	4,580	4,580	4,580	4,580
시 설 비	30,000	-	-	-	-
합 계	135,351	108,675	109,976	111,277	112,578

다. 재원조달 방안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국시비 사업비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구비 100%로 수립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 과장 이 은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35,351	108,675	109,976	111,277	112,578	577,857
도박중독관리사업		135,351	108,675	109,976	111,277	112,578	577,857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5,351	108,675	109,976	111,277	112,578	577,857
	지방세 (구비)	135,351	108,675	109,976	111,277	112,578	577,857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2024. 1. 23.>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